



제10장

기념일 제정과 노동 행사

- '노동의 날' 제정에 관한 건(안)
- 노동의 날 제정의 건(안)
- 노동계몽행사 실시
- 노동사업유신계몽행사계획(안)
- 노동계몽행사계획(안)
- 제2회 노동문화제 개최 계획

‘노동의 날’ 제정에 관한 건(안) ^[1]

국무원사무처 / 1961 / BA0084259

노동의 날 제정의 건(안) ^[2]

총무처 / 1962 / BA0084301

1961년, 1962년 ‘노동의 날’ 제정과 관련한 문서이다. 이들 문서는 ‘노동의 날’ 제정 과정과 기념일의 명칭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미국노동총연맹이 총파업을 단행한 것을 계기로 1889년 7월에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메이데이(노동절)를 결정하고, 1890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것이 메이데이의 시작이었다.²¹⁵⁾ 한국의 노동기념일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장충단공원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시위행렬을 계획했으나 일제 경찰의 사전중지명령에 의해 실행되지 못했다. 이날 메이데이 행사가 실패하자 노동연맹회는 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열고 노동절 축하 선전물을 살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²¹⁶⁾ 1923년에 메이데이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기념행사를 열고자 했지만 일제는 시위행렬은 물론이고 공개적인 집회조차 불허했다.

따라서 1945년 해방 후 맞이하는 메이데이의 의미는 더욱 각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직의 좌우 대립으로 인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과 대한노총은 메이데이 행사를 각기 따로 개최했다. 전평에서는 노동대중 대부분이 메이데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메이데이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계몽활동을 전개했으며, 메이데이의 슬로건으로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공장 폐쇄와 해고반대, 친일파 민족반역자 모리배 숙청 등을 내걸었다. 반공과 반전평의 기치 아래 미군정과 우익 정치인의 지원으로 조직된 대한노총도 메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메이데이 행사에 참석한 우익인사들의 연설은 8시간노동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조하기보다는 ‘건국을 위한 생산 활동’을 역설했고, 건국을 위해서는 8시간 이상 노동해야 한다고 강

215) 메이데이의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학연구소, 『메이데이 100년의 역사』, 서해문집, 2004 참조.

21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50년사』, 한국노동정보센터, 2003, 147~148쪽.

조했다.²¹⁷⁾

1948년 정부 수립 후 전평은 불법화되고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직으로 존재했던 대한노총은 매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승만 대통령은 메이데이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그 날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1958년 10월에 열린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기념일을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3월 10일 기념식을 거행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재편성된 한국노총은 1962년 1월 26일 “건전한 노동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로의욕과 반공사상을 양양하기 위해” 노동기념일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해 달라고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요청했다.²¹⁸⁾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는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3월 10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했다.

문서 [1], [2]는 한국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노동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법정화 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노동의 날’, ‘노동절’을 그대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1963년 4월 17일의 법률 제정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따라서 이들 문서는 노동기념일의 명칭 변화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961년 국무원 사무처장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노동의 날’ 제정에 관한 건(안)>에서는 “3월 10일을 ‘노동의 날’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1962년 2월의 수정안에서는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즉, 1962년 2월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노동의 날’ 제정의 건(안)>에서는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3월 10일을 ‘노동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써 “원안에서는 ‘노동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하기로 했으나 이는 사용자를 구속해야 하는 점에서 입법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날’을 정하는 것으로만 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217) 임송자,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2007, 61~62쪽.

21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1962』, 1962, 346~347쪽.

노동계몽행사 실시

총무처 / 1966 / BA0084465

1966년 4월 11일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문서로, 노동청에서 작성한 <노동 계몽 행사실시 관계 추가자료(정부 관련 부처 실무자회의 결과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한 노동계몽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60년대 정부는 노사협조의 ‘모범노동자’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노동계몽 행사를 실시했다. ‘노동계몽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 주도의 ‘노동계몽기간’ 설정이나 노동계몽 행사 개최는 1960년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인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에도 존재했다.

미군정기에 ‘노동주간 행사’는 1946년 12월에 처음 실시됐다. 법령 제97호 <노동의 공공정책과 노동부 설치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어 실시되었는데, 법령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전국노동주간 행사는 1947년에도 이어졌으며 과도정부 노동부 주최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추진됐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0월에는 ‘노동강조주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포스터 전시회나 전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모범노동자와 사업주를 표창하는 행사를 열었다.²¹⁹⁾ 이러한 행사는 한국전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1952년 11월 노동강조주간 행사를 다시 열었다.

이후 1953~54년은 알 수가 없지만 1955년 보건사회부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를 ‘근로의욕 양양주간’으로 정하고 노사협조와 노동법 해설 등 계몽선전을 전개했으며,²²⁰⁾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을 ‘노동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노사협조와 생산력 확충 및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행사 개최를 결정했다.²²¹⁾

21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송자,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노동담론의 지형(1945~1950)」, 『역사학보』 2018.6, 49~52쪽 참조.

220) 「勤勞意欲昂揚週間. 25일부터 多彩한 啓蒙宣傳 等」, 『경향신문』 1955.2.16.

221) 「29일부터 開始. 勞動強調週間 設置」, 『경향신문』, 『동아일보』 1955.5.12.

이후 1956년에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을 ‘노동강조주간’으로 정했다.²²²⁾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노동강조주간 행사를 추진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보건사회부는 1962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노동계몽기간을 설정하고 계몽선전을 위해 표어 및 포스터를 현상 모집했다. 이러한 행사 내용을 보건사회부 장관의 명의로 『동아일보』에 광고했는데, “근로의욕을 고취 양양케 하는 동시 노사협조 정신을 조성해 산업재건을 기하는 데 있어 계몽 선전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노동계몽 표어와 포스터를 만들도록 취지를 밝혔다.²²³⁾ 이러한 노동계몽행사는 1963년에도 계속됐다. 보건사회부와 노동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노동계몽기간으로 정하고 “노사협조에 의한 생산증강과 평화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행사와 전국의 모범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²²⁴⁾

1965년 노동계몽행사 기간이 9월에서 6월로 변경됐다. 노동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를 노동계몽행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내 몸같이 아끼고 근로자는 사용자를 아낌없이 도와주자”는 표어 아래 ‘일하는 해’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²²⁵⁾ 1966년에는 전 해보다 한 달을 앞당겨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을 노동계몽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청은 노사간담회 개최, 모범근로자 모범사용자 표창, 각종 기술자 등록 실시(6.16~30)에 따른 계몽, 노동문제연구회 개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했다.²²⁶⁾ 이후 1967년과 1968년에도 노동계몽 행사는 지속되었다.

문서는 정부가 추진한 노동계몽 행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서는 행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노사협조’를 표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2) 「勞動強調週間 오늘부터 10日까지」, 『동아일보』 1956.6.4.

223) 「勞動啓蒙標語 및 포스타懸賞募集 公告」, 『동아일보』 1962.8.4.(광고).

224) 「노동계몽 期間 마련. 16일부터 표창도」·「勞動啓蒙期間 設定」, 『경향신문』·『동아일보』 1963.9.14.

225) 「勤勞者 아끼자. 勞動계몽行事 期間」, 『경향신문』 1965.5.14.

226) 「勞動계몽期間 설치. 勞動廳 5月 15일부터 15日間」, 『매일경제』 1966.4.16.

- **선전탑 건립 및 현수막 게양**: 시가 중심지, 사업장 정문, 기타 적당한 장소에 노동 계몽 기간의 표식과 계몽표어를 기재한 선전탑 및 현수막을 건립 게양한다.
- **표어 및 포스터 첨부**: 노동계몽 표어 및 포스터를 인쇄 배부해 관할 중요기관, 각 사업장(노동조합), 극장, 각 차량, 선박 등에 첨부한다.
- **방송보도**: 모든 방송국, 신문사, 극장 등 공보기관을 통해 본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행사기간 중 계속 홍보한다.
- **노사간담회 개최**: 관할 행정관청의 적극 주선 하에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사용자, 경제인, 언론인 기타 노동 관계자를 참석시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 간에 이해증진을 기하고 그 실황을 널리 홍보한다 .
- **모범근로자, 모범사용자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근로자, 사용자 및 노동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직무에 대한 사기와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동청장 각 시도지사는 이를 표창한다.
- **운동회 개최**: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운동회를 개최해 노사 간의 친목과 체위 향상을 도모한다.
- **근로자 “위안의 밤” 개최**: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위안의 밤을 개최해 각 극장 관람 등을 주선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안한다.

이밖에도 계몽사진 전시회 개최, 노동문제 연구회 개최, 건강관리, 안전관리, 국제자유노련 아주지역 기구 대표 및 노사대표 초청 친목회 개최, 각종 기술자 등록 실시에 대한 계몽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또한 첨부된 <노동계몽 행사실시 관계 추가자료(정부 관련 부처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문서는 노동계몽행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린 실무자회의 결과보고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계몽행사의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각 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② 노동계몽행사 실시요령은 지방행정관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규제한 요령으로써 국가 기업 관청(철도, 체신, 전매)의 실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에서 이를 실시한다.

노동사업유신계몽행사계획(안) ^[1]

총무처 / 1973 / BA0084724

노동계몽행사계획(안) ^[2]

총무처 / 1974 / BA0084743

1973년, 1974년 노동계몽행사계획안으로, 1972년 10월유신 이후 ‘노동계몽 행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익한 자료이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단행한 군부세력은 미군정기와 1950년대에 실시됐던 노동주간 행사, 노동강조주간 행사를 ‘노동계몽기간 행사’로 명칭을 변경해 실시했다. 1962년에 노동계몽행사를 개최한 이래 노동계몽행사는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1973년에 제10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²²⁷⁾ 볼 때 1962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 중 두 차례는 연례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서 [1]은 1972년 10월유신 이후 노동계몽행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1973년의 행사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됐다. 행사 명칭을 “노동사업 유신 계몽행사”로 정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행사 목적도 “유신과업의 성공적 완수”, “유신적 노사협력 가치관 확립” 등 앞 시기와 비교해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즉 “유신과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전 국민에게 근로의 신성함을 계몽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해 모든 분야에서 근면과 성실로서 직무에 임하도록 해 유신적 노사협력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행사의 기본 방침은 ① 유신적 노사협조 증진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② 노사 공동체적 사상을 계몽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노사분규를 예방한다 ③ 전 국민에게 근로의욕과 산업재해 예방의식을 고취한다 ④ 인력의 개발과 기술향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정부 수출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⑤ 정부의 노동행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봉사하는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행사 내용은 중앙대회 및 지방대회 개최, 노사간담회 개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노사

227) 「노동청, 崔永鐸 씨 등 7명 표창. 노동사업 維新계몽대회」, 『매일경제』 1973.7.25.

친목을 위한 각종 위안회 개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강화(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시청각 순회 계몽,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강화, 사업장별 안전표지판 부착 권장), 노동법령 강습회 등이었다.

문서 [2]는 문서 [1]과 비교해 1972년 유신 이후 추진된 노동계몽행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974년의 행사는 근로자의 날과 연계시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특이하게도 행사 명칭을 1973년에 “노동사업 유신 계몽 행사”로 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신’이 빠진 ‘노동계몽행사’로 정했다. 그리고 행사 목적도 1973년에 내세웠던 “유신 과업의 성공적 완수”, “유신적 노사협력 가치관 확립” 등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행사내용은 1973년도와 별반 달라진 것은 없으며 “유공자 서훈”이 추가된 정도였다. 이러한 행사는 1975~77년에도 지속되었지만 행사 명칭은 ‘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으로 바뀌었고, 1973~74년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과 연계시켜 3월에 개최되었다.

제2회 노동문화제 개최 계획

총무처 / 1981 / BA0084973

1981년 9월에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계획보고로, 노동문화제 개최 목적, 참가 대상, 주요행사 등을 보고했다. 문서에는 〈제2회 노동문화제 개최 계획〉 대체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원래의 계획에서 시상계획과 협조사항을 수정한 것이다.

1979년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신군부세력은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를 평정했으며,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탱크로 무장한 군 병력을 주요 도시에 투입하는 등 쿠데타를 일으켰다. 신군부정권의 폭압에 저항해 일어난 광주민주항쟁을 유혈로 진압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입법, 행정, 사법의 전권을 장악했으며, 8월 27일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체육관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권력 장악 과정에서 신군부세력은 ‘노동계 평화조치’를 통해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나갔고, 청계피복, 원풍모방, 한국콘트롤데이터 등 민주노조를 폭력적으로 파괴해 나갔다.²²⁸⁾

이러한 토대 위에서 노동청은 1980년 11월 22일부터 5일 동안 제1회 노동문화제를 개최했다. 노동문화제는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및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 이는 바로 반체제 저항문화를 억압하고, 노동운동의 기초를 ‘노사협조’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신군부세력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전국 287개 사업체 근로자들이 출품한 서예·회화·사진·수예·공예작품 총 2,286점 중에서 우수작품 491점이 전시됐다.²²⁹⁾

1981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됐다. 30세 미만의 전국 사업장 남녀 근로청소년들이 출품한 작품 중에서 입선작을 일반에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다.²³⁰⁾

228)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564-566쪽.

229) 「노동文化祭 개막」·「근로자作品전시, 1회 勞動文化祭 오늘부터 世宗會館」, 『경향신문』·『동아일보』 1980.11.22.

230) 「근로靑少年 ‘예술의 꿈’ 한 눈에, 2회 勞動文化祭 개막」, 『동아일보』 1981.10.14.

노동문화제 개최 목적은 “근로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취미를 개발하고 자기 계발의 욕구를 촉진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식 및 건전한 여가생활능력을 함양하고 정서를 순화해 사회와 국가에 유용한 직업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참가 대상은 전국 사업장 소속 30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였다.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이 작품 전시와 시상식으로 구성되었다.

○ 작품 전시

- 기간: 81.10.14~10.18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전시실
- 부문: 회화, 서예, 공예, 사진, 수예
- 입선작품: 600점

○ 시상 계획

- 일시: 81.10.19 10:00
- 장소: 노동부 강당
- 시상 종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노동부장관상, 단체장상(한국노총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경영자협회장이 수여하는 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80년 11월에 노동문화제를 개최한 이래 이러한 행사는 해마다 지속됐다. 노동문화제의 지속성은 바로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에는 노동문화제 출품작이 서예·회화·사진·수예·공예작품으로 제한되었는데, 이후 출품 부문이 확대되어 1987년에 이르러서는 ① 미술부문: 그림·서예·공예·사진·수예, ② 문학부문: 생활수기·단편소설·수필·시·풍트·독후감, ③ 음악부문: 독창·중창·합창으로 구성되었다.

